

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

|         |  |         |  |
|---------|--|---------|--|
| 사 업 체 명 |  | 대 표 자 명 |  |
| 소 재 지   |  |         |  |
|         |  |         |  |
| 환 급 내 역 |  |         |  |
| 부담금 정산액 |  |         |  |
| 부담금 납부액 |  |         |  |
| 환 급 액   |  |         |  |
| 환 급 일 자 |  |         |  |
| 환 급 방 법 |  |         |  |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·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○○○○○○장

직인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|      |
| 부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|
|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
| 전자우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팩스   |